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42437
결재일자	2015.11.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담당	어르신복지담당	교육문화복지담당		
남경희	김기란	이만형	11/24 도일환		
협 조					

2016년도 「장애인 복지일자리」 사업 운영계획

2015. 11.

교육문화복지국
어르신복지과

2016년도 「장애인 복지일자리」 사업 운영계획

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좀 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경험을 풍부하게 갖도록 하며, 사회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함

I 관련 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 21조(직업)
-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-8434(2015.10.12.)호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-6366(2015.11.09.)호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가내시 통보

II 사업 목적

-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·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의 경험 확대

III 세부운영계획

■ 운영개요

- 운영기간 : 2016년 1월 ~12월[12개월]
- 직무분류 : 사무보조, 보육도우미, 디엔디케어, 주차단속보조요원, 급식도우미 등
- 근무장소 : 위탁기관 2개소(성북장애인복지관,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)
- 담당업무 : 장애유형 및 개인별 적성에 맞게 직무배치
- 보수기준
 - 인건비(성북구 생활 임금적용) : 1인당 월424,760원(산재·고용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 - 운영비 : 1인당 연 180천원(산재·고용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기타 소요경비)
 - 추후 예산 변경시 보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
- 운영인원 : 34명(성북장애인복지관,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각 17명 배치)

■ 참여자모집 및 선발

- 모집기간 : 2015. 12. 1. (화) ~ 12. 15. (화) [15일간]
- 모집방법 :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 게시
- 접수장소 : 각 위탁기관에서 접수(신청서【서식6】, 개인정보 조회·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【서식7】 작성 후 제출)
- 참여자 선발과정
 - 1차선발 : 위탁기관에서 면접 등을 통한 1차선발
 - 최종선발 : 위탁기관의 1차선발을 토대로 어르신복지과에서 최종선발
- 참여자 대상
 -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
 - 참여제외대상(아래 표 참조)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

<복지일자리 참여 제외 대상>

- 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- ② 사업자등록이 있는자
(단,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의 경우 근무시간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)
(단,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 시 참여 가능)
- ③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- ④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
- ⑤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※ 참여 중 장애 등급 재심사 후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을 시 판정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, 판정을 받은 해당 월말에 참여 계약 종료

○ 참여자 모집(제출서류)

-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【서식6】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【서식7】 : 자필서명 필수
-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·뒷면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무소득사실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

※ 장애인등록증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

○ 참여자 선발

-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 시 아래의 「우선 선발 및 반복참여 제한 기준」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복지일자리 선발기준표【서식9-2】, 상담의견서【서식8】를 활용하여 참여자를 선발

※ 참여자 선발 시 특정 성 비율이 30% 이하인 경우, 성비를 고려하여 선발

<일반형일자리 우선 선발 및 반복참여 제한 기준>

우선 선발 기준	반복참여 제한 기준
<p>① 1순위 : 신규 참여 중증(1-3급) 장애인</p> <p>② 2순위 : 중증(1-3급) 장애인, 여성장애인,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) 장애인</p> <p>③ 3순위 : 기타</p>	<p>- 2014년부터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 불가</p> <p>※ 단,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(장애등급1-3급, 특수교육대상자)과 지역여건에 따라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을 선발 가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참여기간 산정방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6년 선발 당시 '14년과 '15년에 1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장애인이 반복참여제한 대상에 해당 ※ 참여기간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• 타 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을 총 참여기간에 포함 • 복지일자리,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경험을 총 참여기간에 포함 • 2년 초과하여 참여한 경우 1년간 참여제한, 이후 재참여 가능

※ 기초생활수급자 사전공지 :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아래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참여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 및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.

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

-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·중·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적용
- 대학생(야간대생 포함,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)은 3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제공
-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% 공제 적용

○ 참여계약 체결

- 사업수행기관장은 최종 선발된 참여자와 참여계약 체결

※ 참여조건 합의서, 보안서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

○ 대기자 관리

-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,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「참여자 → 참여자 등록」에 대기자를 등록하여 중도종료자 발생 시 순위별로 대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○ 중복참여 제한 및 사후조치

-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며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전일제(주 30시간 이상 근무) 일자리 참여 불가능

※ 단,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·간헐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가능(단,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 사업인 경우에 한함)

○ 참여자 확정

-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한 1차 선발 : 위탁기관(성북장애인복지관,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)
- 상담(상담의견서【서식8】 기록·관리) : 위탁기관
- 최종선발(고득점자 순) 및 참여조건합의서【서식10-2】, 보안서약서【서식11】 작성 : 어르신복지과

○ 직무배치

- 위탁기관은 지역사회 관공서, 사회복지시설, 사회적 기업 등 복지일자리 세부직무별 적합 배치기관을 개발하고 배치하여야 하며, 직무유형별 주요 배치기관은 아래 표 참고

※ 단, 위탁기관은 위탁기관 외부에 있는 배치기관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각 위탁기관의 복지일자리 배정인원의 30% 이상을 외부 배치기관에 배치하여야 함

< 배치기관내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 >

직무명	주요 내용	주요 배치기관
사무보조	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업무 (문서정리, 복사, 자료작성, 집계 등)	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, 비영리민간기관 등
도서관 사무보조	사서들의 업무를 보조 (장서인, 날인, 색띠부착, 라벨부탁, 도서정리 등)	공공도서관, 전문도서관, 학교도서관, 작은도서관 등
우편물 분류	동별, 집배원별,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업무(우편분류, 반송소인확인, 소인찍기, 작업장 처리 등)	우편집중국, 우편취급국, 우편출장소 등
보육보조	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조(동화구연, 식사보조, 놀이 등)	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
문서파기	공공 및 민간기관,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(현장문서, 공장입고문서, 자체문서 파기 등)	공공기관, 학교, 지역사회복지관 등
홀몸어르신 안부확인	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	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지역사회복지관 등
사회서비스사 업 모니터링	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 (활동보조, 재활치료 사업 등)	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 공공기관,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서비스사업 실시기관
실버케어	신체상,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업무(식사, 용변, 개인위생, 이동보행서비스 등)	주단기보호시설, 경로당 등
디엔디케어 (D&D Care)	장애인이 다른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조 지원하는 업무(차량승하차, 식사지원, 양치지원, 청소 등)	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, 장애인복지관 등
호텔객실관리	호텔,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정리 업무	국공립 유스호스텔
주차단속보조	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 업무	관공서, 복지관, 학교, 종합운동장 등
기부물품관리	기부물품 정리, 포장, 분류, 진열, 정리업무 및 재활용 물품세탁, 수선, 재포장 업무	푸드은행, 푸드마켓 등
린넨실보조	오염된 병원세탁물을 제품의 변형없이 깨끗하게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업무	국공립병원, 대학병원 등
급식보조	단체급식이 실시되는 조리실에서 식재료 준비와 조리, 배식, 기구세척, 주방 및 홀청소, 뒤처리 등의 업무	학교, 유치원, 지역사회복지관, 주단기보호시설 등
은행서비스 안내	은행 고객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	한국은행, 산업은행
어린이	아동문학을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음성언어로	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

동화구연	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	
환경정리	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정비, 청소 등의 업무	시·도청,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지역사회공원, 학교
버스청결관리	버스차고지에서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	관공서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등의 버스 운영기관
캠핑장운영 보조	캠핑장 정리 및 청소, 프로그램 진행보조 등	국공립 캠핑장
재래시장관리 보조	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	재래시장
농림어업관련 업무	여러 가지 간단한 농사일을 수행 및 임업·어업 관련 단순 업무	농업기술센터
교통약자서틀 버스 승하차보조	승·하차 보조 및 버스내부 정리 업무	시·군·구청, 지역사회복지관 등
병실이동지원	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·병원 안내업무	국공립 병원
대형서점도서 정리	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업무	서점 등
장애인인식 개선교육	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에 파견되어 장애인식개선교육	장애인복지관 등
택배물품상하차 보조	택배물품 상하차 및 주변정리 업무	우체국 등

※ 위에서 제시된 직무 외 자체개발 직무를 수행할 경우,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의 후 추진 : 단,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,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 유형으로 수행할 수 없음

■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

○ 근무기간 : 2016년 1월 ~ 12월

○ 근무시간

- 1주 근무시간 : 주 14시간(1일 5시간 이내)
- 월 근무시간 : 월 56시간(탄력적 운영 가능)

○ 휴일

- 근로일이 아래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로 인정
 - ※ 복지일자리 유급휴일 : 근로자의 날, 공휴일, 기타 지자체장이 정한 휴일
 - ※ 단, 1주 동안(휴일과 겹치지 않는)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한함.

○ 공가(근무시간으로 인정)

- ▶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·법원·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
- ▶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- ▶ 건강검진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시 수검 받을 때
- ▶ 천재·지변·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- ▶ 올림픽·전국체전·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
- ▶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

※ 복지일자리는 휴가(연가), 병가, 특별휴가, 여성참여자에 대한 보호 휴가 등은 해당 없음

○ 참여제한(본인 귀책사유 초래인 경우 참여중단 가능)

- 월 근무시간의 1/4이상을 무단 결근 및 무단 지각한 자
- 업무지시 불이행, 민원 야기, 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
- ※ 참여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참여 중단한 경우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하되,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재참여 가능

■ 참여자 교육

○ 교육대상 :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

* 기본 및 보수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

○ 기본교육(필수)

- 시행주체 :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
- 교육방법 : 기관별 집합교육
- 교육시간 : 4시간 이내
- 교육시기 :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
- 교육내용 :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(사업지침교육, 친절교육, 안전교육 등)
- 결과보고 : 교육실시 후 7일 이내

○ 보수교육(자율)

- 시행주체 :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, 배치기관
- 교육방법 : 기관별 또는 직업재활전문기관과 연계한 집합, 소그룹, 개별교육
- 교육시간, 시기, 내용 : 교육 필요 시 기관별 자율편성
- 결과보고 : 교육실시 후 7일 이내

- 결과보고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후 7일 이내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「참여게시판→일자리사업교육」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여자 교육이력 관리

■ 보수 지급(추후 변경 가능)

- 지급액(성복구 생활임금 적용) : 1인당 월 424,760원 (산재·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 - 1시간당 통상임금 : 7,585원
 - 계산방법 : 전체 근무시간 × 시간당 통상임금(7,585원)
- 지급일 : 매 익월 5일 이내
- 지급방법 : 참여자 본인명의 통장 계좌입금
- 운영비 지원
 - 1인당 연 1회 180천원
 - 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 등의 사업자 부담금
 -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경비(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발대식, 교육 및 간담회, 야유회, 평가회, 참여자 명절 선물 등)
- 보험 가입
 - 복지일자리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필수 가입

IV

추진일정 및 소요예산

■ 추진일정

-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: 2015. 12. 1. ~ 2014. 12. 15. [15일간]
- 참여자 선발일정
 -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한 1차 선발 및 상담 : 2015. 12. 1.(월) ~ 12. 15.(월)
 - 최종선발 및 사업수행기관 배치 : 2015. 12. 29.일까지
- 근무개시 : 2016. 01. 01. ~
- 사업참여자 교육실시(근무시간으로 인정)
 - 소양 및 직무교육, 직무별 심화교육 : 2016. 1월 말까지

■ 소요예산 : 179,424천원

- 재원구분 : 국비 30%, 시비35%, 구비35%
 - 국비 : 43,208천원, 시비 : 50,408천원, 구비 : 85,808천원
- 예산산출내역
 - 2016년 인건비 : 424,760원 × 34명 × 12개월 = 173,302천원
 - 2016년 운영비(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등) : 180천원 × 34명 × 1년 = 6,048천원

V

행정 사항

■ 「장애인 복지일자리」 사업 총괄 운영관리 : 어르신복지과

- 기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함
- 「장애인 복지일자리」 사업 운영 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

■ 참여희망자 모집 홍보 : 어르신복지과, 홍보담당관, 위탁기관

■ 장애인 복지일자리 근무관리 : 어르신복지과, 위탁기관

- 근무상황부【서식12】 및 업무일지【서식13】를 위탁기관별 작성·관리, 매월 말 어르신 복지과로 송부
- 각 위탁기관 장애인 복지일자리 담당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및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**2015. 12. 18. (금)까지** 어르신복지과로 제출

붙임 1. 2015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관련서식 1부.

2. 2015년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공고문 1부. 끝.